

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
응시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이규선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8. 26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578호로 2025년 8월 14일 이규선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청년 응시료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,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·행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.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 청년들의 자격증 시험 응시 부담을 경감하고,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라. 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청년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5. 8. 14.~2025. 8. 21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제정 배경 및 취지

-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인구 수 6위, 청년 비율 2위로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지역임.
- 한편,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(15~29세) 고용률은 45.6%로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됨에 따라 영등포구의 사회·경제적 중심축인 청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취업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짐.

구분	청년비율(%)	청년 인구수(명)	총인구(명)
서울시	30.28	2,826,369	9,331,828
1 관악구	41.45	198,088	477,812
2 영등포구	34.95	130,634	373,773
3 광진구	34.57	114,779	331,963
4 마포구	34.44	124,497	361,417
5 동작구	33.50	125,926	375,799

출처: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(19~39세) 2024.12.기준

- 이에 따라, 영등포구는 2024년 5월부터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1)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미취업 청년을

1) 제14조(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) ④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자격시험(자격증 취득, 어학능력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)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11. 9.>

대상으로 「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」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해당 제도는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로 인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,5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수요가 확인된 바 있음.

-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. 참고로, 다음 표는 해당 사업이 시작된 2024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집행현황임.

구분	지원(건/명)	지원금액(원)
2024년 5월~12월(8개월)	738건(650명)	51,578,868원
2025년 1월~6월(6개월)	617건(595명)	42,940,624원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‘청년’의 범위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 청년 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고, ‘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’의 범위를 응시료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로 명확히 함.
- 안 제4조(지원대상)는 1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규정하여, 일시적 전입 등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는 부당 신청을 방지하고, 실질적으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.
- 또한, 구청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을 두어, 지원이 시급하거나 필요성이 높은 청년이 배제되지 않도록 함.

- 안 제5조(지원내용)는 시험응시 종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.
- 안 제6조(신청 및 지급)는 지원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행정처리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.
- 안 제7조(환수조치)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,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함.
- 안 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14조제4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, 동 조항은 구청장이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었음.
 - 다만,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은 별도의 독립 조례로 규정·운영하게 되었으므로, 기본조례 내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」 사업의 수요 증가 및 필요성에 대응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▲지원대상 요건 ▲신청절차 ▲환수조치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운영의 체계성 및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영등포구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참고 자료

1

청년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·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9조(청년 능력개발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·재능·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2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

제14조(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)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·경제·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창의적·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자격시험(자격증 취득, 어학능력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)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